

연구회 설치규정

제1조 회원의 전문분야별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연구 분야를 선도하기 위하여 규칙 제7장 제11조(위원회 및 연구회의 설치)에 의거 전문분야별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2조 연구회는 연구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내규를 정할 수 있다. 연구회 내규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조 연구회 회원은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. 연구회에서는 회원 상호간의 호선으로 위원장 1명 및 위원 약간 명을 선출할 수 있다. 위원장은 연구회를 대표하며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연구회 내규에서 정한다.

제4조 회원은 본인의 희망 및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1개 이상의 연구회에 임의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.

제5조 연구회가 정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거나 그 활동이 극히 저조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은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해당 연구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199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08년 5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